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41
----------	------

2024년 2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현 시립망우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6.30. 만료 예정임.
- 청소년사업 관련 민간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지상 2층,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7.1. ~ 2027. 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44백만원(2024년)
- 「인건비 526백만원, 운영비 63백만원, 사업비 25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재위탁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

〈 제322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동의안 개요
1640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6 - 개관일자 : 2015.06.03. - 시설규모 : 지상4층 (333.37㎡)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734,631천원
1641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15.01.01. - 시설규모 : 지상 2층, (483.12㎡)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843,882천원
1642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성북구 길음로7길 20 - 개관일자 : 2015.4.1. - 시설규모 : 지하1, 지상2 일부(1,510㎡)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05,633천원

※ 재계약 및 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로 한정되고,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관리 등으로,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경험(노하우 등)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3개소 모두 2024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세부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이하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이하 ‘망우단기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6.30.)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 (2024.7.~2027.6.)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15.01.01.
- 시설규모 : 지상 2층,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 수용인원 : 20명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9~24세 이하 여자청소년(가정 밖, 갈등가정, 해체가정 청소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 ~ 2027. 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 844백만원(2024년, 인건비-526백만원, 운영비-63백만원, 사업비-25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망우청소년센터 내 위치한 망우단기쉼터는 9세에서 24세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비행 예방, 긴급생활 지원,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원은 20명이며, 3개월 이내(최장 9개월)의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설치되었고, 개관 시부터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음.
- 총 14명(정규직 8명, 기간제 8명)이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3개 사업 41개 프로그램(교육문화사업 16개, 목적사업 9개, 상담지도사업 19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천원)

2024	2023	2022	2021
843,882	819,842	772,481	766,510

〈 2024년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의 사업추진 현황 〉

분야	사업명
교육문화사업 (16개 사업)	바리스타, 체력단련, 공예창작, 요가, 문화체험, 미니운동회, 청소년 파티, 행복나들이, 가족여행, 학업지원, 축하파티, 자립지원, 쉼터 만족도 조사, 쉼터 간담회, 입소자 자치회의, 인권타임즈
목적사업 (6개 사업)	일상생활지원, 식사생활지원, 의료서비스, 자치활동, 보호서비스, 법률지원
상담지도사업 (19개 사업)	개인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가족상담, 사후관리, 입소적응 지원, 힐링 산책, 동물 교감, 통합예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성교육, 우울자살예방교육, 중독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수퍼비전, 사례회의, 자원봉사, 템플스테이, 운영보고서 및 소식지 발간, 쉼터 홍보, 아웃리치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추진 경위 〉

- 2014.8.14.~2017.6.30. : 신 규 (사)삼동청소년회
- 2017.7.01.~2019.6.30. : 재계약 (사)삼동청소년회
- 2019.7.01.~2022.6.30. : 재위탁 (사)삼동청소년회
- 2022.7.01.~2024.6.30. : 재계약 (사)삼동청소년회

- 평생교육국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망우단기쉘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라 변경(‘시립망우청소년단기 쉘터(여)’ →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쉘터’)되었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수탁협약서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망우단기쉘터는 매년 1월 중순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생교육국은 이를 3월 또는 5월에 승인하고 있으며,
 - 늦은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으로 인해 매년 1/4분기(1~3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쉘터(여)의 사업계획 제출시기 〉

제7조(사업계획) ① “삼동청소년회”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쉘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3p 발췌

※ 지연되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의 시기

- 평생교육국은 국회(국고보조금) 및 의회(민간위탁금)의 예산 확정시기 및 여가부 확정 내시의 시기 등을 이유로 연초 사업계획의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반복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 사업을 추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쉘터(여)의 사업계획 제출·승인 시기 〉

연도	구분	건명	제출일	승인일
2021년	사업승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1.1.27.	2021.5.24.
2022년	사업승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2.1.18.	2022.3.10.
2023년	사업승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3.2.8.	2023.3.7.

- 쉼터의 정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는 타 청소년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쉼터는 청소년을 24시간 보호하는 업무로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응급사항 대응,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의 사무 등을 수행하여, 휴일 및 야간에도 2명 이상의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법령과 조례 등은 각각 다른 수(법령-8명, 조례-10명, 시설-16명)로 쉼터의 정원을 정하고 있어, 효과적 쉼터 운영을 위해 정원 현실화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쉼터의 부족한 인력은 특별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 또는 사업비 속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

(단위:명)

구분	일시 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쉼터	자립 지원관
		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20~25명 미만		
합 계	6	4	5	8	9	4	3
시설장	1	1	1	1	1	1	1`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
자립지원요원	-	-	-	-	-	-	1
행정원	-	-	-	1	1	-	-
조리원	-	-	-	1	1	-	-
행정원·조리원	1	1	1	-	-	1	1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관련 별표1 발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청소년시설 정원 〉

(단위:명)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10	1	-	1	1	2	4	1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2 발췌

〈 2024년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6	10	1	-	1	1	2	4	1	6
현원	14	7	1	-	1	1	1	3	-	7

- 또한, 망우단지쉼터는 현원(14명)의 절반을 계약직(7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본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80% 이상의 고용 유지·승계”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다는 점, 본 시설을 동일 수탁기간이 11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50%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바,
-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립시설 사업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 제공 노하우의 유지, 인력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확인 후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고용 승계·유지 의무사항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 ▶ ‘특별한 사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예: 민간대체인력뱅크, 일터혁신 컨설팅지원 등)
 -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예: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 해야 하는 경우
- ▶ ‘승계범위 조정’*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 : 25%~80%
 -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 : 10명 미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41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 6.30.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지상 2층,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7.1. ~ 2027. 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44백만원('24년)
 - 인건비 526백만원, 운영비 63백만원, 사업비 25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 은 주 (☎ 2133-4131)